



보도시점 2023. 5. 2.(화) 16:00 배포 2023. 5. 2.(화) 10:00

## 국가 연구개발성과가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을 넘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

- 기술이전·사업화·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-

- ①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(20% → 10%)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
- ②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·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·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·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
- ③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,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
- ④ ‘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’ 설치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내외부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
- ⑤ 누구나 가능한 ‘통상 실시’ 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선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·행사를 보장
- ⑥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, 징수방법 다양화,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

□ 정부 R&D예산 30조 시대\* 진입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R&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.

\* R&D예산 : 29.8조원('22) → 30.7조원('23) / 민간부문 포함한 R&D투자 100조시대 진입

\* GDP 대비 국가 R&D투자 비중 세계 2위(4.81%), 절대규모 세계 5위

□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(이하, 추진단)이 6개 관계 부처(과기정통부, 산업부, 교육부, 중기부, 기재부, 특허청)와 함께 마련한 「국가R&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」을 규제개혁위원회(4.28)에 보고하고,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R&D 성과의 활용·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.

□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, 여전히 기술무역수지\*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연구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, 국가R&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·확산되어 실용화·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의 강구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.

\* 기술무역 수지비(21) : 수출액 14,921백만달러/수입액 18,692백만달러 = 0.8

□ 이에 추진단은 우문현답·현장구답\*의 자세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,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·확산을 가로막는 생생한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.

\* 우문현답(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), 현장구답(현장에서 답을 구한다)

○ 그 과정에서 ①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·지원, ②창업을 위한 휴·겸직 허용기간 확대, ③특허 생산성 제고, ④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애로해소, ⑤공공(연)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, ⑥기술료 징수 납부·사용기준 완화 등 6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. 그 결과 이번에 16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.

□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공공R&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

① (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) 공공 R&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

⇒ 관련 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%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일하는 한편,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% 현물(기술)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

- \* 기술이전법 : 주식보유 50% 초과, 자회사 20% 이상
- \* 산학협력법 : 현물출자 30%초과, 주식보유 50% 초과, 자회사 10% 이상
- \* 벤처기업법 : 주식보유 10% 이상
- \* 연구개발특구법 : 주식보유 10% 이상

○출연(연) 기술이전 업무담당인 A연구원은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법정 주식 의무보유지분을 20% 이상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

○ 금번 규제개선으로 10% 이상으로 하향 완화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.

② (임·직원 휴직·겸직·파견 규정 정비) 임·직원의 기술사업화·창업을 위한 휴직·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(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, 교육부)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

⇒ 공공(연) 창업기업의 상임·비상임 임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, 최대 6년까지 휴·겸직 허용하되 세부 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

○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B박사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희망하는데 관련법령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뿐아니라 기술이전법 등에서는 임원만 허용되고 있어서 창업을 접을까 고민 중

○ 그런데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휴겸직 허용기간이 6년까지로 확대되고 임원은 물론 직원까지 허용되어 다시 한번 창업의 꿈을 펼쳐볼 수 있게 되었다.

둘째,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'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'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

③ (우수특허 창출 지원 및 미활용 공공특허 관리)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, 과도한 특허 출원·심사·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활용 특허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

⇒ 질적 평가와 사전·사후적 특허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'국가R&D 평가 표준지침' 개정 및 '대학·출연(연) 연구지원체계평가'에 반영

⇒ 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·출연(연)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·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

- D출연(연)은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미활용특허가 많아지는데도 이를 포기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유하면서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
-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부담이 가벼워 졌으며 불필요한 유지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

셋째,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- ④ (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)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·사업화 내부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

⇒ 공공(연)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·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(연)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 폐지

\*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'23~'25)에 반영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2022.12.14.)

넷째, R&D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

- ⑤ (공공(연)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) 기술이전법에 따른 '공공R&D 성과물의 통상실시(non-exclusive license) 원칙'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

⇒ 공공(연) 보유기술의 통상실시(non-exclusive license) 원칙을 폐지하고, 기술 특성,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, 전용실시, 양도 등 이전 방식 자율 결정

\*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'23~'25)에 반영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2022.12.14.)

- 기업에서 CTO를 담당하고 있는 C부장은 출연(연)으로부터 매력적인 기술을 소개받고 기술을 이전 받기로 결정하였는데 뜻밖에 난관에 봉착하였다.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양도도 안되고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(non-exclusive license) 원칙 때문임
- 다행히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전용(exclusive)으로 사용하거나 양도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이전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.

다섯째,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,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

⑥ (기술료 징수·납부·사용기준 등을 명확화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·시행(21.1)으로 정상기술료 기준 납부방식,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기술료의 정의, 사용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 과중

⇒ 매년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불확실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구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

□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&D 성과제고, 특히 창의적·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·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·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[붙임1] 국가 연구개발(R&D)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

[붙임2] 연구개발(R&D)부터 실용화까지 전(全) 주기에 걸친 장애요인

[붙임3] 국가R&D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인포그래픽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( <a href="http://foryou.better.go.kr">http://foryou.better.go.kr</a> )	책임자	경제규제과장	박경덕 (02-3778-3430)
		담당자	전문위원	김상선 (02-3778-3531)
담당 부서 <총괄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규제혁신팀장	김황식 (044-202-44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영 (044-202-4467)

**1 연구성과 사업화·창업 관련규제 개선**

✓ **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**(산업부, 교육부, 과기정통부, 중기부 등)

**현행**

공공R&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

**개선**

관련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% 이상으로 통일하는 한편,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30% 현물(기술)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



**자회사 주식보유비율을 10% 이상으로 통일  
총 자본금의 30% 현물(기술) 출자비율을 지주회사 설립시에만 적용**  
(기술이전법, 산학협력법, 벤처기업법 등 개정, ~'23년 하반기)

✓ **지분소유 허용기준 마련**(산업부, 과기정통부 등)

**현행**

공공R&D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이후 성장지원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'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로 인하여 창업기업 주식 보유,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 관련 활동 위축

**개선**

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, 시설 및 연구성과 활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

\* 참고 : '대학 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(2022, 한국연구재단)', '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안내서(2022,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)'



**공공(연) 연구자 기술창업 조항 신설 (기술이전법 개정, ~'23년 하반기)  
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세부기준 마련 (~'23년 하반기)**

✓ **출연(연) 현금출자절차 유연화**(과기정통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)

**현행**

출연(연) 연구소 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요구지분 확보·유지를 위한 증자에 대응한 현금출자 시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규정에 따라 적기 대응이 어려운 사례 발생

**개선**

출연(연)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을 '연구개발특구법 등'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 사전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재투자 허용(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)



**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('23.12월)**

✓ **임직원 휴직·겸직·파견 규정 정비**(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, 교육부 등)

**현행**

임·직원의 기술사업화·창업을 위한 휴직·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(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, 교육부) 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

**개선**

공공(연) 창업기업의 상임·비상임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·겸직 허용하되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

\*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'23~'25)에 반영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2022.12.14.)



**임원뿐아니라 직원까지 확대, 최대 6년까지 허용, 세부절차는 기관 자율 위임**  
(기술이전법, 산학협력법, 벤처기업법, 연구개발특구법, 협동연구개발법 개정, ~'23년 하반기)

2 **특허 생산성 제고 관련규제 개선**

✓ **특허가치 평가시스템 개선**(특허청 등)

**현행**

지나치게 다양한 특허가치 평가시스템 운용에 따른 행정낭비 및 평가시스템마다 상이한 평가결과에 따른 혼란 초래

**개선**

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①평가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·보급, ②평가결과에 대한 표본조사, ③사후검증, 평가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 조직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 
(발명진흥법 개정·시행('23.7))



**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(23년 상반기)**

✓ **우수특허 창출 지원**(과기정통부 등)

**현행**

양적지표 중심의 개인 또는 기관 평가로 인한 과도한 특허 출원·심사·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

**개선**

질적 평가와 사전·사후적 특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&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·출연(연)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 검토

\*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·활용제도 개선(2022.12.21., 과학기술혁신본부)



**국가R&D 평가 표준지침 개정,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('23년 하반기)**

✓ **미활용 공공특허 대책**(과기정통부, 특허청 등)

**현행**

미활용 특허 누적, 지재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

**개선**

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·출연(연)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·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

\* 공공R&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등



**공공R&D 특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(~'23년 하반기)**  
**2023년도 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(~'23년 하반기)**

✓ **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**(과기정통부, 특허청 등)

**현행**

국가 안보 및 외국 기업에 노출될 경우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전략 기술에 대한 국가 또는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의 비밀유지 전략 필요

**개선**

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기술의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보호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'특허·영업비밀 전략(IP-MIX) 가이드 라인' 수립 지원

\*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(IP-MIX) 전략 매뉴얼 발간(2022.11.30., 특허청)



**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('23년 하반기), 특허영업비밀 전략(IP-MIX) 가이드 라인의 활용 지원 ('23년 상반기)**

**3 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 관련규제 개선**

✓ **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**(산업통상자원부 등)

**현행**

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·사업화 내부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

**개선**

공공(연)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·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(연)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은 폐지

\*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'23~'25)에 반영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, 2022.12.14.)



**기술이전법 제11조(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) 개정(~'23년 하반기)**

✓ **기술이전·사업화 투자재원 확보**(산업통상자원부, 과기정통부 등)

**현행**

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또는 기술료 수입 중 일부를 기술이전·사업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전담조직운영에는 크게 부족

**개선**

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기술료 수입의 지출용도에 사업화 투자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구비 사용용도에 사업화 투자 추가 여부 검토



**기술이전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(~'23년 하반기)**

**4 공공 R&D 성과 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제 개선**

✓ **공공연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**(산업통상자원부 등)

**현행**

기술이전법에 따른 '공공R&D성과물의 통상실시(non-exclusive license) 원칙'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

**개선**

공공(연) 보유기술의 통상실시(non-exclusive license) 원칙을 폐지하고, 기술특성,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, 전용실시, 양도 등 이전방식 자율 결정

\*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'23~'25)에 반영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, 2022.12.14.)



**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(~'23년 하반기)**



✓ **균등한 기술이전 기회보장을 위한 절차 도입**(산업통상자원부 등)

**현행** 공공기술을 전용실시 또는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공정한 절차 부재에 따른 균등한 기회 보장이 어려울 수 있게 됨

**개선**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접수 시 일정 기간(예: 15일)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비교 검토하여 결정  
\*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(23~25)에 반영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, 2022.12.14.)

☞ **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개정**(~23년 하반기)

**5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관련규제 개선**

✓ **기술료 징수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**(과기정통부 등)

**현행*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·시행('21.1)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이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매출액과 수익검증 등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 및 기술료 납부 관련한 행정부담 과중

**개선** 민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기업부담경감 및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납부한도 도달 시 제출서류 간소화

☞ **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부담 완화** ('23년 상반기)

✓ **기술료 징수방법 개선**(과기정통부 등)

**현행** 국가연구개발혁신법('21.1)에 따른 '기술료'의 정의가 '금액'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료 징수를 막고 있음

**개선**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혁신법 매뉴얼 등에 반영

☞ **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반영** ('24년 1/4분기)

✓ **기술료 사용기준 개선**(과기정통부 등)

**현행** 혁신법 시행령 제정 시에 '지적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'이 '출원·등록·유지'로 변경되면서 현장에서는 미활용 특허포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

**개선** 현행 규정으로도 기술료를 특허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혁신법 매뉴얼 등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시 법 시행령 개정

☞ **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** ('23년 하반기)

**연구개발(R&D) 전(全) 주기에 걸친 성과 제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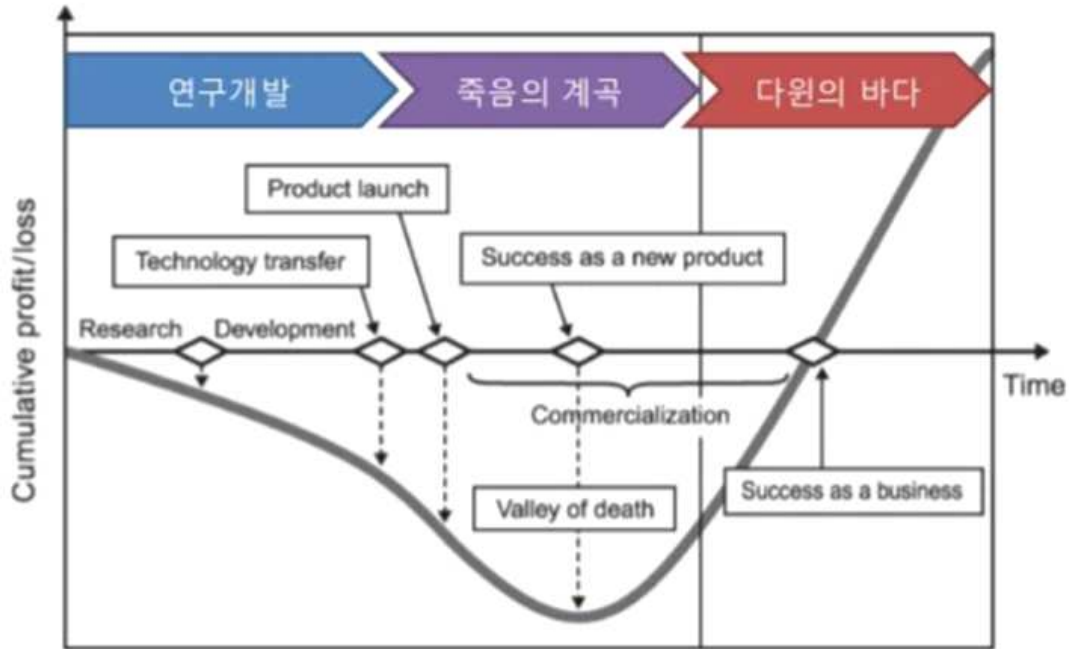
<i>Ideas</i>	<b>R&amp;D</b> (기초원천연구 → 개발)	<연구성과> 논문, 특허, 보고서 원문, 연구시설장비, 기술요약정보, 화합물, 생명자원, 소프트웨어, 신품종, 표준	실증 → 초기 사업화	시장진입 → 성장진입 → 성숙단계
	악마의 강 ( <i>Devil River</i> )		죽음의 계곡 ( <i>Death Valley</i> )	다윈의 바다 ( <i>Darwinian Sea</i> )

- \* 국가 연구개발(R&D) 성과
  - 사회·문화적 성과(Impact), 과학기술적 성과(Output), 경제적 성과(Outcome)
- \* 연구개발(R&D) 성과 제고
  - R&D 전(全)주기(Plan-Do-See)에 걸친 대책
  - 특히, R&D성과 활용·확산(특히, 기술거래, 사업화, 창업 등)

- 연구개발(R&D)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혁신단계별 장애 유형
  - 악마의 강(*Devil River*) , 죽음의 계곡(*Death Valley*), 다윈의 바다 (*Darwinian Sea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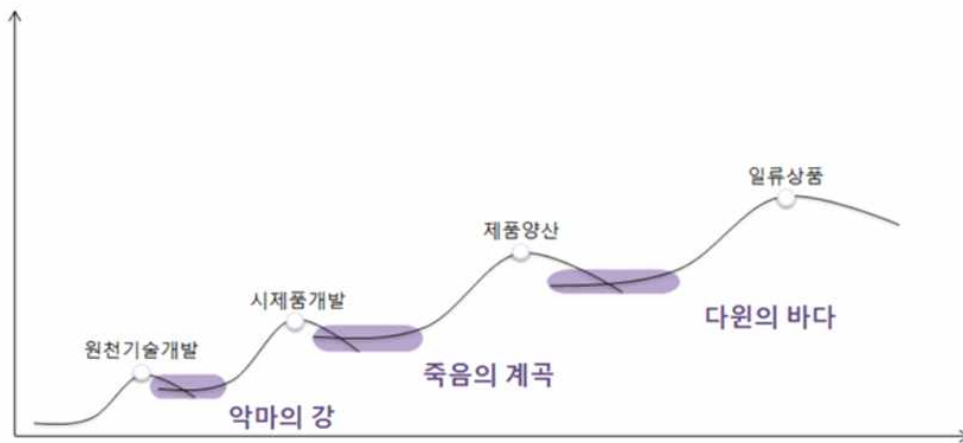


(<https://www.slideahare.net>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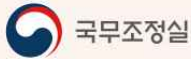
(출처 : Osawa and Miyazaki, 2006)

- \* 죽음의 계곡 (Death Valley)
  - 연구개발(R&D) 완료후에도 실증 및 초기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기간
- \* 다윈의 바다 (Darwinian Sea)
  - 양산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마케팅, 판로개척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기간



죽음의 계곡과 단계별 장애 유형

출처 : 김길해(2013)



규제혁신

# 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쉽고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”

국가 R&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

## I 규제혁신추진단, 국가 R&D 성과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

대한민국 정부 R&D 예산 30조 시대,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는 우수하나 여전히 R&D 성과의 활용·확산 노력이 요구

22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

규제혁신추진단, 국가 R&D 성과가 실용화·사업화·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



## I 규제혁신 주요 사례

### 사업화·창업

#### ☑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기준 완화

**현행** 기술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부처 법령마다 상이

**개선**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10% 이상으로 통일

\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#### ☑ 임직원의 휴직·겸직 기간 확대

**현행** 연구원 등이 기술사업화 회사 창업 혹은 임직원으로 갈 경우, 현 기관(공공연구소 등)의 휴직·겸직 허용기간이 정부부처마다 상이

**개선** 현 기관의 휴직·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

\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### 특허 생산성

#### ☑ 우수특허 창출 지원

**현행** 과도한 특허 출원·심사·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

**개선** 특허 평가는 양적 지표에서 질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 및 미활용 특허 처분의 자율성 부여(특허 포기 등)

\* 23년 상반기 개정 예정

### 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

#### ☑ '기술이전·사업화 전담조직' 설치 의무 폐지

**현행** 기관 내부에 R&D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 전담조직 설치는 필수로 형식적 운영사례 발생

**개선** 내부 전담조직 설치 규정을 폐지하여 기관 자율성 강화

\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### 기술이전방식

#### ☑ R&D 기술이전방식 확대

**현행** 공공(원) 보유기술의 이전방식은 '통상실시' (non-exclusive license)만 허용

**개선** 기술 특성,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방식 확대 (통상실시, 전용실시, 양도 등)

\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

### 기술료

#### ☑ 다양한 형태로 기술료 징수

**현행** R&D 기술이전에 따른 '기술료'의 정의가 '금액'으로 명시되어 주식 등으로 징수 가능 여부 모호

**개선** 다양한 형태로(현금, 주식 등) 징수 가능

\* 23년 하반기 개정 예정